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2022. 3.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처)

I 주요 변경사항

총 괄

구	- 분	2022학년도	_	2023학년도	<u> </u>	2024학년도	2024학년도	
모집	수시	■ 196명(57.1%)	24254	■ 194명(56.6%)			24454	
인원	정시	■ 147명(42.9%)	343명	■ 149명(43.4%)	343명	■ 150명(43.6%)	─ 344명	
주요 전형 모집 인원 변화	전형 수시 ■학종(다문화): 2명 모집 ■학종(농어촌학생): 8명 인원 ■학종(기초생활차상위): 9명		■ 학종(교직작인성인제): 96명 ■ 학종(강원교육인제): 70명 ■ 학종(국가보훈): 4명 ■ 학종(다문화): 2명 ■ 학종(농어촌학생): 8명 ■ 학종(기초생활치상위): 9명 ■ 학종(특수교육대상지): 5명		■ 학종(교직작인성인재): 96명 ■ 학종(강원교육인재): 70명 ■ 학종(국가보훈): 4명 ■ 학종(다문화): 2명 ■ 학종(농어촌학생): 8명 ■ 학종(기초생활차상위): 9명 ■ 학종(특수교육대상자): 5명			
	정시	■ 수능(일반학생) : ■ 수능(강원교육인제)		■ 수능(일반학생) : ■ 수능(강원교육인제		■ 수능(일반학생) : ■ 수능(강원교육인재		
	적인성					- 국,수,영,탐(2평균-조 합12이내 - 한국사 4이내		
수시 모집	강원	- 국,수,영,탐(2평균-직 합12이내 - 한국사 4이내	부탁제외)	- 국,수,영,탐(2평균-직탐제외) 합12이내 - 한국사 4이내		- 국,수,영,탐(2평균- ^조 합12이내 - 한국사 4이내	낙탐제외)	
최저 학력 기준	보훈 다문화 농어촌 기초·차상위	- 국,수,영,탐(2평균-직탐제외) 합15이내 한국사 4이내				- 국,수,영,탐(2평균-주 합14이내 - 한국사 4이내	낙탐제외)	
	특수			- 국,수,영,탐(2평균-직탐제외) 합15이내 - 한국사 4이내		- 국,수,영,탐(2평균-조 합16이내 - 한국사 4이내	낙탐제외)	
	시모집 서류변경	■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폐지)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1	수시 경비율	■서류평가 100%		■서류평가 100%		■서류평가 100%		
	면접	■수시 면접폐지 ■정시 면접폐지		◆수시 면접폐지●정시 면접폐지		◆수시 면접폐지●정시 면접폐지		
	L육대상자 원자격	■정신장애 지원 저	한	■정신장애 지원 저	한 폐지	■정신장애 지원 저	한 폐지	
정시		■ 나군 ■ 수능 100% ■ 과탐 가산점 3%		■ 나군 ■ 수능 100% ■ 과탐 가산점 3%		■ 나군 ■ 수능 100% ■ 과탐 가산점 폐지	 I	
정시 최저등급		수능(특수교육대상자) 정시 이월 선발 없음		수능(특수교육대상자) - 국,수,영,탐2평균(합 - 한국사(4이내)		수능(특수교육대상자) - 국,수,영,탐2평균(합 - 한국사(4이내)		

세부사항

1.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및 비율

(단위 : 명)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구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	(%)	(%)	(%)	(%)	(%)	(%)	(%)	(%)
수시모집	174	22	196	172	22	194	172	22	194
구시조합	(54.2)	(100)	(57.1)	(53.6)	(100)	(56.6)	(53.4)	(100)	(56.4)
거니미지	147		147	149		149	150	-	150
정시모집	(45.8)	_	(42.9)	(46.4)	_	(43.4)	(46.6)	_	(43.6)
게	321	22	343	321	22	343	322	22	34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모집시기 및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단위 : 명)

	거청		모집인원						직전년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2022학년도 2023학년		학년도	∤년도 <mark>2024草</mark>		대비	
	11 0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증감
		학생부종합 (교직적·인성인재)	96	-	96	_	96	-	0
		학생부종합 (강원교육인재)	72	ı	70	-	70	-	0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	4	ı	4	-	4	-	0
	학생부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정의 자녀)	2	-	2	_	2	-	0
수시 	위주 (종합)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	8	-	8	-	8	0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9	-	9	-	9	0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	-	5	-	5	-	5	0
		소 계	174	22	172	22	172	22	0
	수능	수능(일반학생)	109	ı	129	-	130	-	+1
정시	위주	수능(강원교육인재)	38	ı	20	-	20	-	0
		소 계	147	ı	149	-	150	-	+1
		정원 내.외 계	321	22	321	22	322	22	+1
	합계 	합 계	34	13	34	43	34	14	+1

Ⅱ 전형 일반사항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게여	게여 다지다이 기여 교지이스			2022학년도			
계열	모집단위	지역	교직이수	주	야	합계	이월인원
사범	초등교육학과	강원	교직이수	321	0	321	1

수시모집

1. 모집인원 : 194명

(단위 : 명)

거청 0청			모집	인원	
전형유형	대분류	중분류	실제사 용 명칭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일반학생	학생부종합 (교직적·인성인재)	96	-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학생부종합 (강원교육인재)	70	-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내)	제2호_국가보훈대상자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	4	-
학생부	대학별 독자적 기준	사회배려대상자(사회기여, 봉사, 다문화 등)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정의 자녀)	2	-
위주 (종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외)	제1호_농어촌・도서벽지학생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	8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외)	제1호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9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외)	제1호_장애인 등 대상자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	-	5
		172	22		

2. 전형유형별 세부사항

① 학생부종합(교직적·인성인재)

	의 영구 등합니	<u> </u>			
	모집인원		96명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방법		서류평가 10	00%	
ā	수능 식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 등급 합 12 이내 •한국사 등급 4 이내	과목 평균-직탐제외)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국내 정규 고교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너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제	출업(예정)자 등 학생부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외고 일부	학교생활기록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별도 제출 없음) [단,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기타 온라인제출 불가능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날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 해외고교 일부 이수자의 경우 해당기간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해외학교 생활기록서류 별도 제출(방문, 우편)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너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출	비인가학교, 검정고시자 등 정규학생부를	자기활동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네 서식(우편제출)	
-	제출할 수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O THI 게 코		
류	없는 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우편 제출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너 온라인 입력(별도 제출 없음)	
	해외고교	자기활동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네 서식(우편제출)	
	졸업자	해외고교 졸업증명서	•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	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을 함께 제출	

② 학생부종합(강원교육인재)

모집인원		70명		
지원자격	강원도 내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할) 졸업(예정)자			
전형방법	서류평가 100%			
수능최저 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 등급 합 12 이내 •한국사 등급 4 이내	목 평균-직탐제외)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	[단, 온라인 제공 비	온라인 제공 동의(별도 제출 없음) 동의자, 기타 온라인제출 불가능자는 학교생 † 원본 대조필 날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	

③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

모집인원		4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단, 제10호 제외)의 교육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8호 원 대상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교육지원 대상자			
지원자격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의 교육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교육지원 대상자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전형방법	서류평가 100%					
수능최저 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등급 합 14 이내 •한국사 등급 4 이내	평균-직탐제외)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국내 정규 고교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졸업(예정)자 등 학생부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외고 일부 이수자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별도 제출 없음) [단,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기타 온라인제출 불가능자는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날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해외고교 일부 이수자의 경우 해당기간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해외학교 생활기록서류 별도 제출(방문, 우편)
제 _	비인가학교,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출	검정고시자 등 정규학생부를	자기활동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우편제출)
서	제출할 수 없는 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Опа Да
류	WL 1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우편 제출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별도 제출 없음)
	해외고교 졸업자	자기활동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우편제출)
		해외고교 졸업증명서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을 함께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손자녀 중 조부, 조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 등본' 추가 제출)

^{*} 추가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

④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의 자녀)

모	집인원			21	ВО		
지:	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전혀	형방법			서류평기	/ 100%		
	능최저 력기준	등급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년 합 14 이내 사 등급 4 이내	균-직탐제외)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국 정규		입학원서	• 원서접수 /	나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제	졸업(예정)자등 학생부를제출할 수있는 자(해외고 일부		학교생활기록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별도 제출 없음) [단,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기타 온라인제출 불가능자는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날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 해외고교 일부 이수자의 경우 해당기간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해외학교 생활기록서류 별도 제출(방문, 우편)			
출	비인기	. 하고.	입학원서	• 원서접수	나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ᅥ	검정고/ 정규학	니자 등	자기활동기록부	• 학교생활기	록부 대체 서식(우편제출)		
	제출학 어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우편 제출			
류	없는 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구년 제출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별도 제출 없음)		
	해외		자기활동기록부	• 학교생활기	록부 대체 서식(우편제출)		
	졸업	설 자	해외고교 졸업증명서	•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 졸 업증명서	와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을 함께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부, 모 중 일방이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 증명서(상세) 1부 (전적 국적 명시)			
다문화 가정의	부, 모 중 일방이 귀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전적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 등본' 추가 제출)			
가능 자녀	■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1부				
	■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1부(전적 국적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사망	■ 사망한 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또는 제적등본 1부			

- * 추가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
- ※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성명은 제출하는 모든 서류상 일치해야 함

⑤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모집인원	8명							
지원자격	농어촌 인정 지역의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유형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특수목적고(과학고,영재고,국제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는 제외함 (유형①)농어촌 인정 지역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②)학생 본인만 농어촌 인정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전형방법	서류평가 100%							
수능최저 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직탐제외) 등급 합 14 이내 •한국사 등급 4 이내							
	입학원서 1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별도 제출 없음) [단,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기타 온라인제출 불가능자는 학교생활기록부 / 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날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 기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세부사항 】

- ▶ 농어촌 인정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 태백시(우리대학교 총장이 인정한 지역)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 해당 학교 모두가 농어촌 인정지역의 학교이어야 함(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 농어촌 인정 지역 내 이사, 전학 인정
- 부모와 학생 거주지, 학교 소재지는 농어촌 인정 지역에 해당하면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함
- ▶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인정 범위
- 학교 재학 중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학교 졸업시까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상급(중,고)학교 진학 전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유형①의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인정
-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친권자(양육권자)를 기준으로 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 ▶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심사할 수 있음

구 분	제 출 서 류						
	■ 농어촌	· 학생 확인서 1부 (고등학교장 직인날인)					
	■ 가족괸	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지원자 1부, 부 1부, 모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유형① 호기네르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추가서류	o 부 ^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지원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친권 소재 명시)					
	모						
	■농어촌 학생 확인서 1부 (고등학교장 직인날인)						
유형②	■ 주민등록초본(지원자)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추가서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추가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단, 양육권 등은 판결 일자를 기준으로 본교 지원 자격 심사 시 처리할 계획임)

[※] 농어촌학생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⑥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1	OBMIT OBTION & MOTIMON						
모	집인원	9명						
					경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초생활 ·급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 수급자		
지원자격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차상위 계층 중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 한부모 가족 지원)를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전	형방법				서류평가 100	%		
-	능최저 력기준	등급	l, 수학, 영 급 합 14 여 사 등급 4		균-직탐제외)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국내 정규 고. 졸업(예정 등 학생부 제출할 · 있는 지 (해외고 일 이수자 포		입학원서	l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제			부를 수 자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별도 제출 없음) [단,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기타 온라인제출 불가능자는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날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해외고교 일부 이수자의 경우 해당기간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해외학교 생활기록서류 별도 제출(방문, 우편) 			
출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이	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서	비인가 ⁶ 검정고시 정규학성	자 등 생부 를	등 자기활동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우편제출)			
류	제출할 수 류 없는 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우편 제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구근 제출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별도 제출 없음)			
	해외고		자기활동	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	내체 서식(우편제출)		
	졸업	사	해외고교	_ 졸업증명서	•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을 함께 제출			

^{*} 기본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

구 분	제 출 서 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아래 가) ~ 라) 지원자별 해당 서류 1부 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함) 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다) 자활근로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

⑦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모	집인원	5명							
지	원자격	중 하 ■ 장이 ■ 「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1~7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전	형방법			서류평가 100%	,				
	능최저 력기준	등급	l,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 급합 16 이내 남사 등급 4 이내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국니 정규 :	-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제	졸업(예 등 학생 제출할 있는 (해외고 이수자	정)자 부 를 수 자 일부	학교생활기록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별도 제출 없음) [단,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기타 온라인제출 불가능자는 항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날인) 1부를 우편 방문 제출해야 함] 해외고교 일부 이수자의 경우 해당기간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해외학교 생활기록서류 별도 제출(방문, 우편) 					
출		-L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별도 제출 없음)					
서	비인가 ⁶ 검정고시 정규학생	자 등	자기활동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우편제출)				
류	제출할 수		수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우편 제출				
	ᆹᆫ	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TC 개호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별도 제출 없음)					
	해외고	<u> </u>	자기활동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최	세 서식(우편제출)				
	<u>졸</u> 업		해외고교 졸업증명서	•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	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을 함께 제출				

^{*} 기본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

【 추가 제출서류(방문 또는 우편) 】

구 분	제 출 서 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장애인증명서 1부 ■ 진단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1~7급)자 (국가보훈처 등록)	■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원(상이등급 기재) 1부 ■ 진단서 1부

<유의사항>

• 「진단서」
- 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료만 유효함
- 2차 진료기관급 이상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개인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3. 평가 및 반영 방법

① 서류평가						
평가 방법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 1인에 대하여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지성, 품성, 잠재력을 정성·종합 평가함					
	■ 학교생활기록부 1) 반영범위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비교과를 범위로 하며 졸업자의 경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 비교과를 범위로 함				
	검정고시자,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자기활동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해외고교 일부 이수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해외 및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비교과				
	2) 교과영역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자료	검정고시자	검정고시 성적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해외고교 일부 이수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해외 고교 성적증명서, 국내 고교 학생부 상의 교과 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 비교과영역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출결상황, 교내수상경력, 창의적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적사항 등 교과 영역을 제외한 학생부 전체				
	검정고시자	자기활동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해외고교 일부 이수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자기활동기록부 내용 및 해외 고교 및 국내 고교 학생부 상의 비교과 영역				

	■ 평가영역별 배점 및 등급											
	영 역			배점								
		o o	¬	A+	Α	Α-	B+	В	B-	C+	С	C-
	지성	34	교과학습	26	24.7	23.4	22.1	20.8	19.5	18.2	16.9	15.6
	~10	54	독서활동	8	7.6	7.2	6.8	6.4	6	5.6	5.2	4.8
평가 영역	품성	28	자율활동	9	8.55	8.1	7.65	7.2	6.75	6.3	5.85	5.4
	<u> </u>	20	봉사활동	19	18.05	17.1	16.15	15.2	14.25	13.3	12.35	11.4
및 성적산출	잠재력	삭재력 38	동아리활동	20	19	18	17	16	15	14	13	12
		30	진로활동	18	17.1	16.2	15.3	14.4	13.5	12.6	11.7	10.8
	합계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그 외 학생부 내용(출결, 행동발달상황 등)도 지성, 품성, 잠재력에 반영될 수 있음											
서류평가 과락			득한 점수가 라도 불합격			빈 경위	우 과릭	ᅷ으로	판정현	하며 선	선발인	원이

② 최종선발	
합격자 선발 및 동점자 처리	 ■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소수점 여섯째 자리 반올림) ■ 동점자 처리 :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하되, 3순위 이후에도 동점자 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함 - 1순위: 서류평가 품성 영역 고득점자 - 2순위: 서류평가 잠재력 영역 고득점자 - 3순위: 서류평가 지성 영역 고득점자
부적합자 불합격 처리	 지원자격 미비자(자격서류 미제출자 포함) 전형별 수능 최저 등급 미충족자 우리대학에서 수학이 부적합 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자 * 선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불합격 처리함.

정시모집

1. 모집 시기 : '나'군

2. 모집 인원 : 150명

(단위: 명)

전형		모집	l인원			
유형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실제사용명칭				
	일반전형	일반학생	수능(일반학생)	130	-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수능(강원교육인재)	20	-	
수능 위주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외)	제1호_농어촌·도서 벽지학생	수능(농어촌학생)	-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외)	제1호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시모집 미충원시 선발함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외)	제1호_장애인 등 대상자	수능(특수교육대상자)	-		
		150	-			

[※]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조정과 수시모집 미충원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방법 】

수시 미충원 시	정시 이월 시
학생부종합(교직적·인성인재)	수능(일반학생)
학생부종합(강원교육인재)	수능(강원교육인재)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	수능(일반학생)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능(일반학생)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수능(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수능(특수교육대상자)

3. 전형별 세부사항

① 수능(일반학생)

모집인원		130명							
지원자격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	음 <u>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u>							
제출서류	■ 입 힉	·원서 1부 (온라인 작성)							

② 수능(강원교육인재)

모집인원	20명							
지원자격	강원도 내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이수한(할) 졸업(예정)자	강원도 내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고교 전 교육과정을 기수한(할) 졸업(예정)자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 수 능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온라인 작성) ■ 학생부 (온라인제공 동의 : 고교 입학 등 ※ 단, 원서접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않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반드시 학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 제공에 동의하지						

③ 수능(농어촌학생)

	•							
모집인원			수시모집 결원 발생의	으로 인한 이월 인원				
지원자격	농어촌 인정 지역의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유형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특수목적고(과학고,영재고,국제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는 제외함 (유형①)농어촌 인정 지역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②)학생 본인만 농어촌 인정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수능최저 학력기준	■ 없음			■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1115	■입학원서 1부 (온라인 작성) ■고교 학생부 (온라인제공 동의) 공통 ※ 단, 원서접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1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 농어촌 학생 확인서 1부 (고등학교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형①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지원자 1부, 부 1부, 모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제출서류	#8∪ 추가서류	■ 중 힉	ţ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이혼		예) 1부 (부 또는 모 기준) 상세) 1부 (친권 소재 명시)				
		사망	■사망한 부/모의 기본	!증 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1부(사망사실 명시)				
		■ 농어	l촌 학생 확인서 1부 (고	L등학교장 직인날인)				
	유형②	■ 주민	<u> </u>	주소 변동이력 포함)				
	추가서류	■초등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1.	부				
		■ 중 힉	t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추가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단, 양육권 등은 판결 일자를 기준으로 본교 지원 자격 심사 시 처리할 계획임)

【 기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세부사항 】

- ▶ 농어촌 인정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 태백시(우리대학교 총장이 인정한 지역)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 해당 학교 모두가 농어촌 인정지역의 학교이어야 함(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 농어촌 인정 지역 내 이사, 전학 인정
- 부모와 학생 거주지, 학교 소재지는 농어촌 인정 지역에 해당하면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함
- ▶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인정 범위
- 학교 재학 중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학교 졸업시까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상급(중,고)학교 진학 전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유형①의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인정
-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친권자(양육권자)를 기준으로 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 ▶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심사할 수 있음

④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집인원		수시모집 결원 발생으로 인한 이월 인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세부 지원자격」의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 수급자							
지원자격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계층 중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건강보험 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보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자활							
수능최저 학력기준	■ 없음	■ 수능성적 온	라인 제공 동의 필수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온라인 작성)								

^{*} 기본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

구 분	제 출 서 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아래 가) ~ 라) 지원자별 해당 서류 1부 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동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함) 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다) 자활근로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되, 발급일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함

⑤ 수능(특수교육대상자)

• •									
모집인원	수시모집 결원 발생으로 인한 이월 인원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1~7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전형방법	서류평가 100%								
수능최저 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직탐제외) 등급 합 16 이내 •한국사 등급 4 이내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온라인 작성)								

【 추가 제출서류(방문 또는 우편) 】

구 분	제 출 서 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장애인증명서 1부 - 진단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1~7급)자 (국가보훈처 등록)	-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진단서 1부

<유의사항>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원서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한 자료만 유효함
- 장애인 증명서에는 반드시 장애종별 및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서」

- 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료만 유효함
- 2차 진료기관급 이상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개인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4. 평가 및 반영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학생부 수능							전형			
반영 총점	기본 점수	반영 비율 (%)	반영 <u>총</u> 점	기본 점수	반영 비율 (%)	반영 총점	기본 점수	반영 비율 (%)	총점	
-	-	-	700	-	100	-	-	-	700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반영				수능영	경역별	반영	비율(%)				
구분 양	영역	국어	국어 수한					탐구9	경역			계
	수	_ 폭억	구역	영어	사회	과학	직업	사/과	사/직	과/직	사/과/직	
비율(%)		28.6	28.6	14.2	-	-	-	28.6	-	-	-	100
최고점	4	200	200	100	-	-	-	200	-	-	-	700
활 용 지표		표준점수	표준점수	환산점수				표준점수			-	

■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산부여

			수	·학		탐-	7
활용지표	한국사	국어	확 률 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영어	사탐	과탐
표준점수	-	-	-	-	-	_	-
등급	환산점수	-	-	-	-	_	_

■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반영과목 및 점수 반영 방법

대학수학 능력시험 반영방법

탐구영역 특정과목 반영											
사	구	직	업탐구		Ft-7 cal cal						
반영 과목수	자유선택	과 목 지정	반영 과 목 수	자유 선택	과목 지정	탐구영역 점수반영방법					
2	0	-	-	-	-	2과목 합산점수					

■ 성적 산출 방법

③ 국어 영역 환산점수 :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100%④ 수학 영역 환산점수 :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100%

⑤ 탐구 영역 환산점수 :

- 사회탐구 : 본인이 취득한 과목 표준점수×100%

- 과학탐구 : 본인이 취득한 과목 표준점수×100% (과목별 적용)

❷ 영어 영역 환산점수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5점	88점	76점	59점	39점	22점	10점	0점

☞ 한국사 영역 환산점수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점	9.8점	9.6점	9.4점			0점		

반영점수 = ∑(국어,수학,탐구,영어,한국사 환산점수)

* 한국사 가산점 부여 결과 700점을 초과할 경우 700점으로 함.

■ 수능점수 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수능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합격자 선발 및 동점자 처리	 ■ 동점자 처리 :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하되, 4순위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함 1순위: 수능 국어 환산점수 우수자 2순위: 수능 수학 환산점수 우수자 3순위: 수능 탐구 환산점수 우수자 4순위: 수능 영어 환산점수 우수자 					
부적합자 불합격 처리	 지원자격 미비자(자격서류 미제출자 포함) 수능 5개 영역[국,수,영,탐(2-직탐제외),한] 미응시자 우리대학에서 수학이 부적합 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자 * 선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불합격 처리함. 					

추가모집

- 정시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원내 결원은 일반학생 전형으로, 정원외 결원은 정원외 전형별 인원으로 선발함.
- ◎ 선발방법은 수능100%로 하되 정시모집의 수능성적 산출방법을 따름.